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 - 399
----------	---------

제출연월일 : 2002. 4.

제출자 : 동두천시장

1. 제안이유

쓰레기봉투 무료제공등 수수료 감면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쓰레기봉투 무료제공등 수수료 감면대상을 변경함(안 제21조)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제1호외의 자로서 통·반장
3. 천재지변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일반용)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인 경우 세대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center;">동두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p> <p>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무료제공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제1호외의 자로서 통반장 3. 시장이 지정한 모범음식점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때에는 매월 지급하되, 제1호의 경우는 1인당, 제2호의 경우는 세대당, 일반용봉투는 40리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20리터를 초과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업소당 음식물 쓰레기전용봉투 60리터를 지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동두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p> <p>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제1호외의 자로서 통·반장 3. 천재지변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일반용)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인 경우 세대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p>